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추심 관련 규제 강화 등〉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87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법 적용대상 고액채권 가액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4
2.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통지 의무화 등	9
3.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 추심 금지	17
4. 추심연락 횟수·방법 등 규제 강화	20
5. 채무자의 채무상환 거절 또는 추심연락 중지 의사 표현 시 추심 연락 중단	24
6.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23.
3. 회 부 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당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채무자에 의한 추심중단 요청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한 협상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시효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일부 채무의 변제가 있던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 즉 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부의 변제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됨. 그러나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사이에는 민사법에 대한 지식,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 불균형이 있다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인채무자에게 시효경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도록 하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하여 추심연락 횟수·방법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정채무추심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무 추심 연락을 중단하도록 함. 이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공정한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 적용의 기준인 고액채권의 기준을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 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금지함(안 제14조).
- 라. 현행 규정은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하로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일에 3회 초과할 수 없고, 1개월에 10회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전화 등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안 될 때만 보충적 수단으로 채무자를 대면접촉(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연락의 횟수·방법 제한을 강화함(안 제16조).
-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중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 바. 개인금융채무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5조).

Ⅲ. 검토의견

1. 법 적용대상 고액채권 가액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 개정안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함)」의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고액채권의 가액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u>5천만원</u>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u>제7조를</u>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u>1억원</u> ----- ----- <u>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u> <u>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u> -----.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u>3천만원</u>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u>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u> 및 <u>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u> 적용하지 아니한다.	<u><삭제></u>

□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법 적용대상을 개인금융채권의 가액에 따라 구분하여 5천만원 이상 채권에 대하여는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를, 3천만원 이상 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양도의 제한, 양도 예정의 통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채권양도내부기준) 및 제31조부터 제40조(채무조정 관련 제도)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이는 채무자 보호조치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일정 가액기준 이상의 고액채권에 대하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취약채무자 보호의 필요성과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최근 평균 연체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현행법상 대부분의 조항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취약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 조항 일부의 적용이 제외되는 고액채권의 가액기준을 현행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려는 것임.

[최근 가계 및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원금 연체금액(2025년 10월말 기준)]

① 전체 채권 기준	
연체 채권 구분	평균 원금연체금액(만 원)
개인(가계) 채권	9,827
개인사업자 채권	9,644
평 균	11,011
② 채권액 기준 상위 0.01% 채권 제거 ⇒ 1,974개 채권 제거	
연체 채권 구분	평균 원금연체금액(만 원)
개인(가계) 채권	3,231
개인사업자 채권	6,826
평 균	4,182

(자료: 신용정보원)

-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의 제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이 적용됨에 따라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채권금융회사의 부담 및 시장 전반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당시¹⁾ 설정된 현행 법 적용대상은 개인금융채권의 분포 및 법 적용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²⁾, 적용대상 금액기준 상향에 따른 채무자 보호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금리 상승 등 금융회사의 비용 전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액채권 기준 상향 시 채무자의 상환 의지 감소, 즉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어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회수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리스크 증대로 이어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현 규제 수준에서도 취약 연체 채무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적용대상 금액기준 상향시 채무자 보호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비용 전가(금리 상승) 등 부작용은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 여신금융협회는 법 적용 고액채권에 대한 기준 상향은 채권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초래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개인금융채무자의 의도적 연체 유발 가능성을 높여 도덕적

1) 2024. 1. 16. 제정, 2024. 10. 17. 시행

2) 당시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상황을 기준으로, 원금 3천만원 이하 대출은 건수 기준으로 73%를 차지하여 취약층 보호 효과가 큰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해이(법률 악용) 심화가 우려되며, 채권금융회사의 기대회수를 하락으로 금리인상 및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정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

- **생명보험협회**는 고액채권 기준 상향 시 신용대출 채무 외 주택, 사업장과 같이 담보가 있는 채무 또는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채무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보력과 소득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추심 행위 등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2.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통지 의무화 등

□ 개정안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채권의 경우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해당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 또한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정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 중단·정지를 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2장 <u>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u> <신설>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신설>	제2장 <u>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u> 제1절 <u>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u>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3조의3에 따라 소멸시효가</u>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완성된 사실을 통지한 개인금융
채권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제13조의2(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의 관리)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하
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
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관리내부기
준에 따라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제13조의3(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제13조의4제1항
에 따른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소멸시효 완성일을
말하며, 이하 “소멸시효완성일”이
라 한다)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멸시효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소멸시효완성일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4(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1. ~ 5. (생략)

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항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9. (생략) ④ · ⑤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u> 5. ~ 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소멸시효 제도란 권리자가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商事債權)의 소멸시효는 5년임³⁾.

○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⁴⁾.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2000다25484 등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전 대법원 판례⁵⁾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⁶⁾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일부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음.

□ 판례 변경 이전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등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판례 변경 이후에도 시효완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의 채무 일부 변제 시 시효이익 포기 의사의 존부에 대한 법적 쟁송이

5)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 다수

6) 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서, 시효완성 이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기존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그 사정으로부터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함으로써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실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개정안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자체적인 소멸시효관리내부 기준⁷⁾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 해당 완성사실 및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업체에 대한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소멸시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 채무자들의 가계부채 해소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고 채권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내용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상거래 윤리 또는 채권자 재산권의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한 관계기관의 반대의견이 제출된바, 개정안 심사 시 해당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중앙회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의 자발적 채무 변제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상거래 윤리 및 계약 준수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7) 참고로 현재에는 자율규제 하에 업권별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임.

신용정보협회는 개인금융채무자에 한해서만 다른 종류의 채무자들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융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채권자 재산권의 본질을 제약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

농협중앙회는 현재 양도 예정통지 및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 등 채무자 안내 업무가 이미 시행중인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신설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지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하더라도 도달주의가 아닌 발송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3.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 추심 금지

□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호 신설).

○ 제14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⁸⁾.

현행	개정안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14조(추심의 제한) ----- ----- -----. 1. ~ 3. (현행과 같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u>개인금융채권</u> 5. (현행 제4호와 같음)

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 이미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면책 받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추심행위는 금지되고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역시 채무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¹⁰⁾, 양 법률에서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금지되는 추심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대면 방문·전화연락 등의 추심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채권을 ‘양도받은’ 자, 즉 전문 추심업체로 제한되어 있어 채권 양도 이전의 최초 계약당사자인 금융회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제660조(과태료) ③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③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의 범위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¹¹⁾,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역시 기존 계약당사자인 금융회사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개정안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근거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면책 채권에 대한 추심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추심 금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제재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추심연락 횟수·방법 등 규제 강화

☐ 개정안은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 제한을 현행 ‘7일에 7회’에서 ‘7일에 3회, 1개월에 10회’로 강화하고, 대면 추심연락 방식은 다른 원 격수단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6조(추심연락의 제한) ① ----- -----3회를 <u>초과하거나 1개월에 10회를</u> ----- ----- ----- ----- ----- ----- ----- ----- ----- ----- ----- . 다만,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는 대면 추심연락은 전화 등 다른 원격수단으로 연력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6조는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시행령에서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¹²⁾, 이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¹³⁾.

○ 개정안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 채무자들이 채권 금융회사등과의 정보·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1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 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 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 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측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 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측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1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임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추심연락 규제를 강화하여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정당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 10. 17.)이 1년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운영 추이를 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다음 의견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및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여신금융협회는 현행(7일 7회, 1일 2회) 추심의 경우에도 채권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와 적극적으로 채무변제를 협의하기 어려운 규제체계에 있고, 추심제한 강화 시 고의적 연락 회피자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도덕적해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면 방문추심은 채권회수라는 계약상·재산권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정내용은 채권 추심 및 회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당한 채권회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대면 추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할 경우 채권 금융 회사의 정당한 추심권은 극히 제한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생명보험협회는 추심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면 금융기관은 회수를 목적으로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신용자를 포함한 고객 전반에게 전가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5. 채무자의 채무상환 거절 또는 추심연락 중지 의사 표현 시 추심 연락 중단

□ 개정안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추심활동 중단 통지·구제방법 안내·법적조치 실행 통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심연락을 중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 1. <u>추심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u> 2. <u>채무추심자나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송 등의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u> 3. <u>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u>

□ 현행법 제18조는 개인금융채무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⁴⁾.

○ 다만, 현행법상 추심연락 일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 거절 의사 또는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추심연락 일체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임.

○ 참고로, 미국 「공정 채권 추심 관행법(FDCPA,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¹⁵⁾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인에게

-
- 1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거부하거나 추심인과의 연락 중단을 원한다는 서면 통지를 보낸 경우 채권추심인은 채무자와의 연락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면 통지 수령 후 채권추심인이 △추심 노력을 중단할 것임을 통지하거나, △추심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한 구제 수단(예: 법적 조치)을 강구할 것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만 연락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채무자 일방의 요청으로 추심연락 일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채권금융회사등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소지가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이미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되어 있으며¹⁶⁾,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¹⁷⁾을 통해 채무자 본인 대신 대리인이 추심연락

15) 미국 연방 법전 15 U.S.C. § 1692c

Ceasing Communication with the Consumer

When a consumer refuses, in writing, to pay a debt or requests that the debt collector cease further communication, the collector must cease all further communication, except to advise the consumer that:

- The collection effort is being stopped.
- Certain specified remedies ordinarily invoked may be pursued or, if appropriate, that a specific remedy will be pursued.

Mailed notices from the consumer are official when they are received by the debt collector.

16) ❶ (추심연락의 유예) 채무자의 수술·입원, 혼인 등의 경우에 추심 불가

❷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일주일에 28시간 이내), 특정 수단(특정 주소 방문, 전화 등 중 두 가지)의 추심 제한 요청 가능

17) 현행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을 받도록 할 수 있는바,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고려할 때 개정 내용의 도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개정내용 입법 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현재에도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떨어져 개정내용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여신금융협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단독 의사 표시만으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 관계의 균형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연체채권 회수 제약으로 부실채권 장기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내용은 채권자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추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회수 불확실성 리스크관리를 위해 대출 업무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 운용을 하더라도 추심 제한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성실한 고신용자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신용정보협회**는 개정내용은 헌법상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관계의 균형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추심연락을 할 수 없게 되면 추심자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수하던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연체채권에 대하여 오히려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음.

6.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 개정안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채무자대리인”이란 개인금융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u>제40조의2(채무자대리인의 선임) ①</u> <u>개인금융채무자는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재 금융위원회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서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¹⁸⁾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¹⁹⁾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동 제도는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심연락을 채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대리인이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채무조정 절차 및 그 교섭과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음.

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 동 제도는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²⁰⁾에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고 조력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변호사법」과의 충돌 논란, 추심절차의 비효율, 채무자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안 중 채무조정교섭업 관련 내용]

제67조(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 ①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등록 없이 채무조정교섭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68조(등록 요건)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
2.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는 것
4. 임원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최근 5년간 제8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그 밖에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조력하도록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취지상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당시 논의되었던 ‘채무조정교섭업’ 제도와 유

20) 입법예고기간: 2022. 3. 8. ~ 2022. 3. 28.

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은 채무자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만일 「변호사법」에 다른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채무자대리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될 경우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대리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²¹⁾과의 충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이와 관련한 법무부의 반대입장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교섭업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바 있음.
- 다음으로, 채무자대리인의 과도한 마케팅, 높은 선납수수료 등 과도한 영리활동으로 인하여²²⁾ 개인금융채무자가 과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적 채무조정 절차의 확대

2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2) 영리 채무조정 서비스업이 시행된 미국의 경우 도입 초기에 영세업자의 과대 광고 및 마케팅, 높은 선납 수수료 요구, 결과에 책임지지 않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였음.(임형석,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1권 12호, 2022. 6.)

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지나친 수수료 수취 등으로 인해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으므로 개정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여신금융협회는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적 채무조정이 확대되어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역할이 축소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별도의 채무조정 대리인 선임 비용 발생, 채무조정 절차의 복잡성 및 채무조정 진행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8